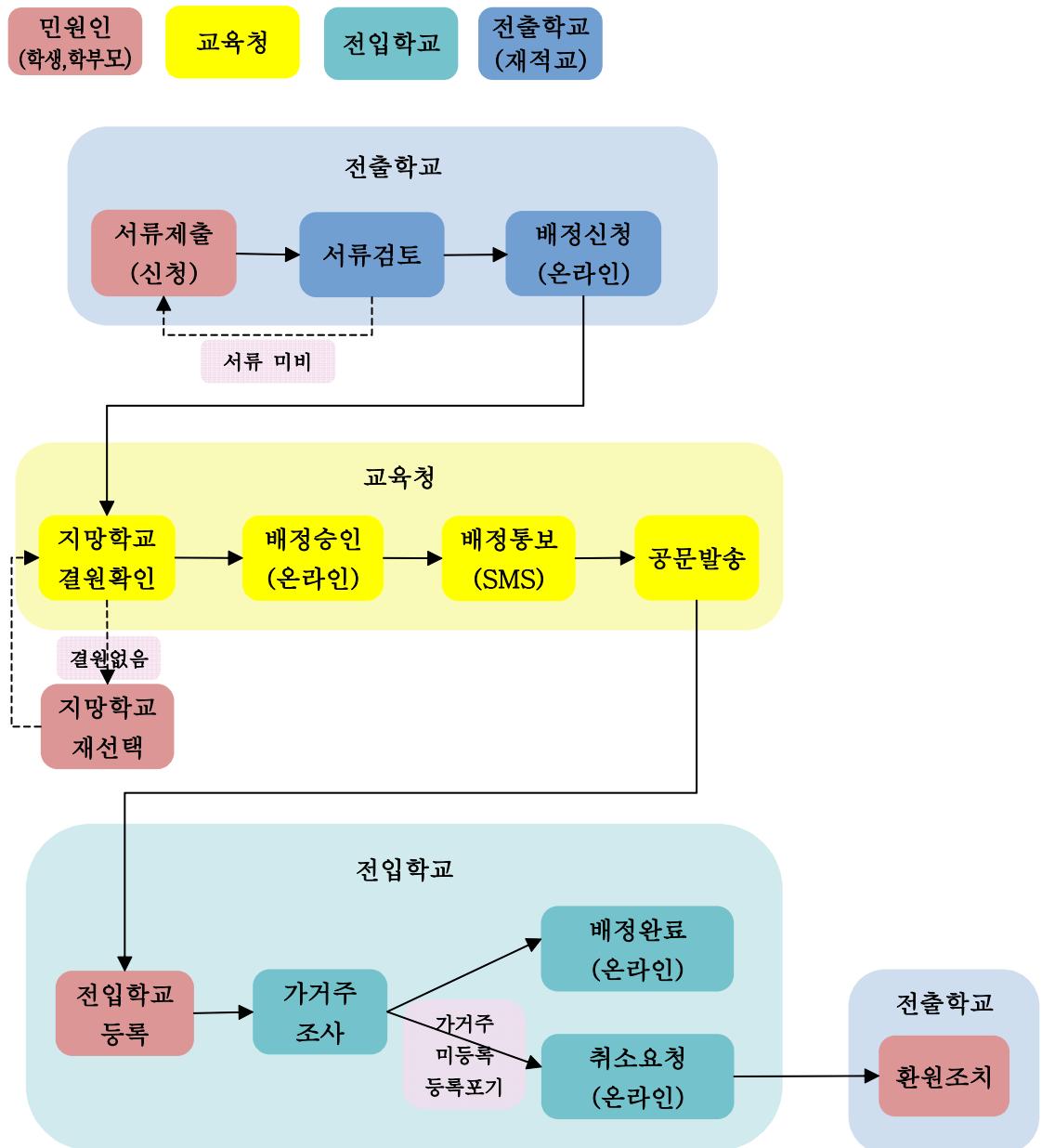


1

서울시내 소재 고등학교에서의 전 · 편입학 업무 흐름도

① 후기 일반고로의 전 · 편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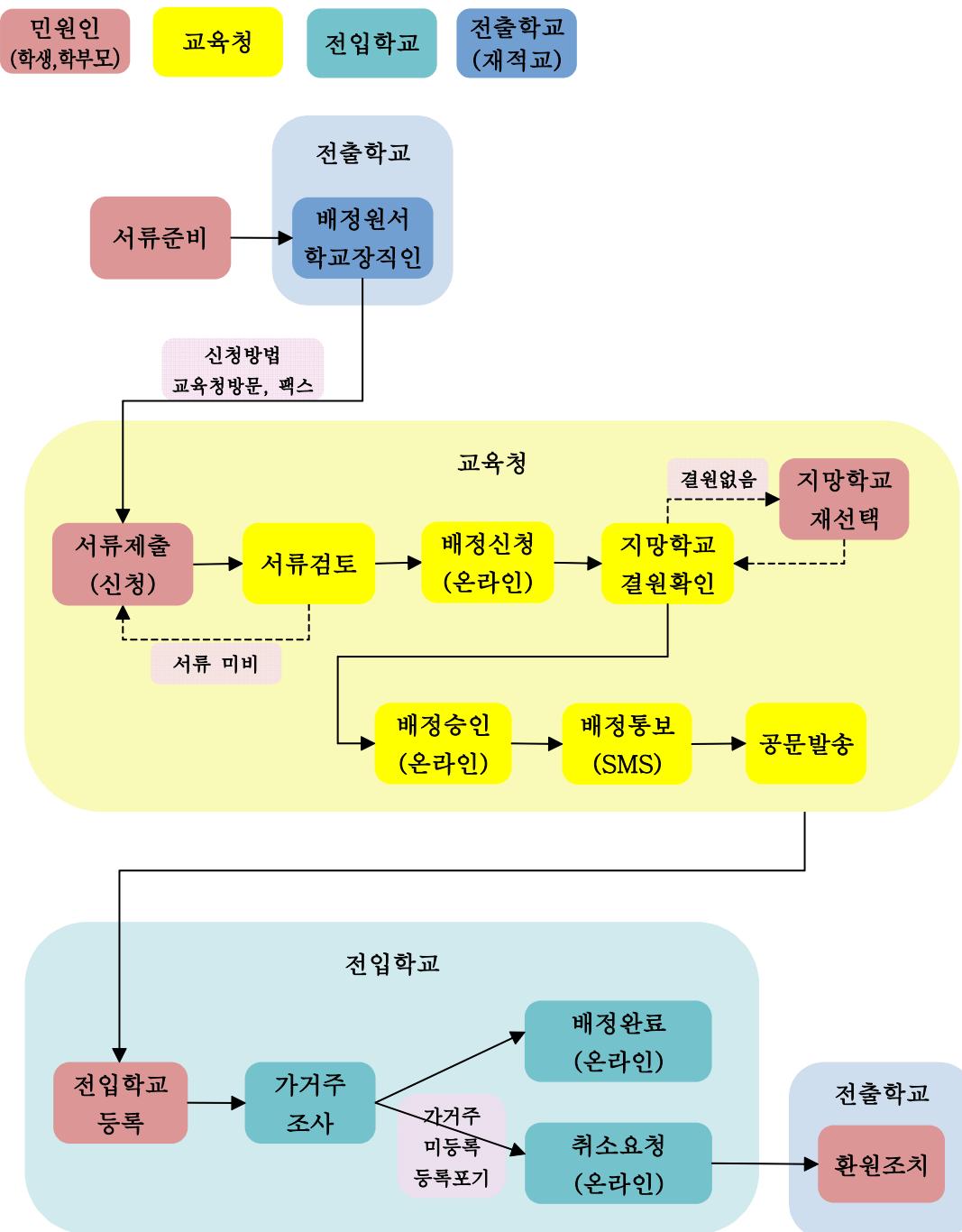


② 학교장선발고 (자율형사립고 / 특성화고 / 특수목적고 / 기타전기고)로의 전 · 편입학 ⇒ 해당학교에 전 · 편입학 절차 문의

2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서의 전·편입학 업무 흐름도

① 후기 일반고로의 전·편입학

② 학교장선발고(자율형사립고/특성화고/특수목적고/기타전기고)로의
전·편입학 ⇒ 해당학교에 전·편입학 절차 문의

3

전 · 편입학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Q1. 전가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부, 모, 학생이 모두 함께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Q2. 전입학, 재입학, 편입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① **전입학**은 A학군 내의 고등학교 재학생이 B학군으로 이사를 하는 등의 사유로, B학군 내의 학교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② **재입학**은 A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A 고등학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③ **편입학**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4조)

- A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재학 당시의 학년으로 거주지 학군 내의 B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Q3. 별도의 신청기간이 정해져있나요?

Answer

- 계열이 같은 경우: 3학년 1학기까지(일반고·자사고·중점학교 → 일반고)
 - 계열이 다른 경우: 2학년 1학기까지(특목고·특성화고·학력인정대안학교 → 일반고)
 - ① 전입학 : 상시 가능 (단, 서울소재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학은 별도의 기간 확인)
 - ② 재입학 :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시로 허용
 - ③ 편입학 : 자퇴·퇴학 당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자퇴·퇴학일 이전일까지 (예시: 자퇴일: 2026. 6. 10. ⇒ 편입학 신청기간: 2027. 3. 2. ~ 6. 9.)
- ※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의 진로변경 전입학 신청기간(별도 안내, 전학자격은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 참조)
- 1학년 1학기: 8월 초 / 1학년 2학기: 12월 말
(단, 2026학년도 2학년에 한해 26학년도 3월 진로변경 전학 실시)

Q4.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Answer

- 서울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현재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
 -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민원실로 팩스 또는 방문 신청
 - 팩스접수 (Fax. 02-6973-9913, 9914)
 - 방문접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민원실)
- ※ 단, 3월 신학기 전학 신청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Q5. 배정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nswer

우리교육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매일 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류 미비 또는 신청량 증가기간(신학기 전편입학 주간, 특성화고 신청 기간 등)으로 인해 2~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6. 배정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nswer

배정원서에 작성한 보호자 휴대폰으로 배정결과가 문자메시지로 통보 됩니다.

Q7. 배정통보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배정받은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기간은 배정받은 날부터 평일 기준 7일간입니다.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배정이 취소됩니다. 배정이 취소되면 원재적교로 환원조치되고, 3개월(방학기간 제외)동안 전학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시 : 배정일: 2026. 3. 6.(금) ⇒ 등록기간 : 2026. 3. 6.(금)~3. 16.(월)]

Q8. 어떤 경우에 배정이 취소되나요?

Answer

가거주, 등록포기, 미등록의 경우에 배정이 취소되고, 원재적교로 환원 조치되고, 3개월(방학기간 제외)동안 전학신청이 불가합니다.

Q9. 가거주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가거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거주로 판단합니다.

- 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
 -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 : 부모 사망 등)
 -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 가거주인 경우에는 배정이 취소되어 원재적교로 환원조치되고, 3개월 (방학기간 제외)동안 전학신청이 불가합니다.

Q10. 등록기간 안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기간내 미등록으로 배정이 취소되고, 3개월(방학기간 제외)동안 전학신청이 불가합니다.

Q11. 서울에서 타시도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전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nswer

전입학교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도봉구에서 노원구로 전가족이 이사를 갑니다. 새로 이사가는 주소지 인근의 후기 일반고로 배정을 받고 싶은데, 전학이 가능한가요?

Answer

도봉구와 노원구는 같은 북부 학군입니다. 같은 학군 내에서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은 불가능합니다.

Q13. A학군에 거주를 하면서 B학군의 학교를 고교선택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 A학군의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Answer

거주지학군과 다른 학군의 학교를 배정받은 경우, 거주지학군(A학군)과 배정학군(B학군) 내에서는 거주이전이 있더라도 전학이 불가합니다.
예) 서부 거주->중부 배정 후 중부나 서부로 거주지 이전 시 전학 불가

Q14. 타시도로 이사를 갔다가 거주하던 학군으로 다시 이사 오는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Answer

거주이전으로 인한 전학으로 가능합니다. 단,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이 학교 전입일을 기준으로 모두 3개월 이상인지에 따라 학교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재학기간 각각 산정)

- 3개월 이내: 전재적교로 배정 (타학교 지망불가)
- 3개월 이후: 1~3지망 선택 가능 (전재적교도 지망가능)

[예] A학군 ‘가’ 고등학교 재학생이 B학군으로 3월 6일 이사하여 3월 15일 ‘나’ 고등학교로 전입하고 다시 A학군으로 이사하여 전학 신청을 하는 경우, 지망학교를 선택할 수 있나요?

* 여기서의 3월 15일은 ‘나’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상 학생의 학교 전입일임

1. 3개월 이내인 3월 16일 ~ 6월 14일 기간에 A학군으로 이사하여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재적교인 ‘가’ 고등학교로 배정
2. 3개월 이후인 6월 15일 이후에 이사할 경우, A학군 내의 일반고 중에 3개 학교 지망 가능(전재적교도 지망가능)

Q15. 이사는 1주일 후 예정인데, 전입신고만 먼저 하고 배정을 받아도 되나요?

Answer

배정받은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배정받은 학교에서 가거주 조사를 하여 가거주(위장전입)로 확인되면 배정이 취소됩니다.

이사와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된 후 전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16. 고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타시도의 전국단위 모집인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주이전 없이 전학이 가능한가요?

Answer

서울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가 타 시·도 고등학교(영재학교 제외)에 입학 후 다시 서울시 소재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할 경우,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이후에 배정합니다.

Q17.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학생 혼자 서울의 친척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학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불가능합니다. 학생의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이전을 하여야만 합니다.

Q18.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과 후기 일반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이 가능한가요?

Answer

- 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후기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후기 일반고 뿐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으로의 전편입학이 불가능합니다.
※ 단, 학기 시작 전 10일~학기 시작 후 10일이내에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학군의 결원있는 학교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 내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참고)
- ② 후기 일반고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 자퇴 후 편입학 가능 (전출입 처리 불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에 포함이 되는 학교만 ‘고등학교’에 해당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이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상 정규학교의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근로청소년, 정규학교 진학 탈락자, 학업중단 학생등을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를 말하며, 졸업 시 정규학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신동신정보산업고, 서울자동차고, 일성여고, 정암미용고, 진영고, 청량정보고, 청암고, 한림실업고/연예예술고

Q19.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는 전학이 불가능한가요?

Answer

가정폭력 · 아동학대 · 성폭력 ·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제보자 자녀는 계열 및 시기 제한 없이 전학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3학년 2학기부터는 전학이 불가능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 학생, 교권침해 학생의 경우 전학조치 처분 시 시기와 상관없이 동일 계열로 강제 배정

Q20. 이혼 소송 중으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이 가능한가요?

Answer

소송이 완료되어 서류상으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확인이 가능하여야만 ‘이혼’ 사유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Q21.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에 구비서류를 교육청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민원인은 서류를 전출학교(재적교)로 제출하고, 전출학교(재적교)는 서류를 받아 교육청으로 전송합니다.

Q22. 친권자 전학동의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 건가요?

Answer

‘이혼’ 사유로 서류를 제출하는 학생이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 학생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친권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공동친권인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친권자 전학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단독친권이면서 친권자와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친권자 전학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단독친권이면서 친권이 없는 부 또는 모와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친권자 전학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3.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학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학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결원에 따라 학교 배정,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
- 일반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학
 - 자율형사립고는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이므로, 희망하는 학교로 직접 전입학 문의 및 신청,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

Q24. 과학중점학급으로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데, 일반학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재학중인 학교에서 일반학급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과학중점과정을 포기하고 거주지 학군 내 다른 후기 일반고의 일반학급으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장 추천(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Q25. 학교장 추천 등 전학은 무엇인가요?

Answer

아래 6개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추천(동의)을 받아 전학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각 유형별 구비서류는 시행계획 참고)

- ① 학교폭력 / 가정폭력 / 성폭력 / 아동학대 피해학생
- ② 심각한 질병
- ③ 통학여건(입학일 이후 학군내 거주지 이전 여부 및 기준 부합 확인 후 진행)
- ④ 공익제보자 자녀
- ⑤ 학교폭력加害 학생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 ⑥ 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Q26. 특성화고를 다니다가 1학년 때 자퇴했습니다. 후기 일반고로 편입학 할 수 있나요?

Answer

특성화고를 자퇴한 학생은 후기 일반고로 편입학 할 수 없습니다. 자퇴한 특성화고로 재입학한 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의 진로변경 전입학 시기에 맞춰 전입학만 가능합니다.

Q27. 서울특별시 소재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어디인가요? 재학 중에 후기 일반고로 전학이 가능한가요?

Answer

서울특별시 소재 학력인정 대안학교로는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여명 학교, 서울실용음악학교, 지구촌학교가 있습니다. 위 학교 재학생은 2학년 1학기까지 후기 일반고로의 전학이 가능합니다.

Q28. A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자퇴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B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Answer

학업중단 학년보다 윗학년으로의 편입학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자퇴 시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으로만 편입이 가능합니다.